

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3. 4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 정 이 유

지방세법 및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“그 다음달 말일까지”에서 “그 다음달 15일까지”로 단축 함.
- 나. 「도시계획법」이 폐지되고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이 2003. 1.1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문정비.
- 다.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“시·읍·면”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 것을 “시”에 두도록 함.
- 라.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“7월 1일부터 7월 10일”에서 “7월 1일부터 7월 31일”로 연장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함.

3. 참 고 사 항

- 가. 지방세법 제177조의4·제213조·제250조,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4
- 나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
구미시세조례 중개정조례안

구미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3항 “그 다음달 말일”을 “그 다음달 15일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제1호3목중 “도시계획법”을 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제51조제1항중 “시·읍·면”을 “시”로 하고 **제2항중** “당해 시·읍·면안의”를 “시 관내의”로 한다.

제98조제2항중 “7월 10일”을 “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) ①~② (생략)	제22조의2(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지) 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<u>그 다음날말일까지</u> (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)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.	③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다음달 15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-----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세율)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27조(세율) ①----- -----,
1. 건축물	1. -----
(1)~(2) (생략)	(1)~(2) (현행과 같음)
(3) <u>도시계획법</u>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,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,000분의 6	(3) <u>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</u> ----- ----- -----
(4) (생략)	(4) (현행과 같음)
2.~3. (생략)	2.~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51조(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 수입금액·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<u>시·읍·면</u>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. 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<u>당해 시·읍·면</u>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 ③~④ (생략) 제98조(납기) ① (생략) ②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<u>7월 10일</u>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	제51조(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<u>시</u>----- -----, ②----- <u>시 관내의</u> ----- ----- -----, ③~④ (현행과 같음) 제98조(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<u>7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,